

연구논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아동청소년)의 삶의 제한성으로부터 가능성 연계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출신 양육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현경**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양육한 북한출신 어머니가 인식한 중국과 남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과거를 보듬으며 성장 가능성을 연계, 확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눈덩이 표집방법에 따라 총10명을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접하였다. 연구 질문은 ‘북한출신 양육자가 인식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아동청소년)의 삶의 제한성으로부터 가능성 연계 과정이란 어떠한 의미인가’였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총 4개의 범주, 1) 중국에서: 그늘진 생에서 버팀목이 된 자녀, 2) 남한이주 과정에서: 힘들었던 생존의 터널을 빠져나감, 3) 남한입국 후 하나원에서: 어린 이방인에 대한 다른 차원의 배려, 4) 하나원에서 벗어난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힘겨움을 받쳐줄 삶의 끈을 잡아당김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논의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과 다문화지원법의 통합적 또는 절충적 관점에서 교육적 혜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비보호아동청소년, 삶의 제한성, 가능성 연계, 북한출신양육자의 인식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됨(NRF-2014S1A5A2A01010825).

**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borry52002@naver.com)

© 2015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4년 한 해 동안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396명(여성이 1,092명으로 78%해당)이었으며, 2015년 3월 잠정적으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93명(여성이 241명으로 83%해당)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아동청소년의 경우 2013년 9월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남한 내 북한출생 초중고재학생은 1,182명(초등532명, 중등270명, 고등380명),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초중고재학생은 840명(초등627명, 중등208명, 고등5명)으로 총 2,022명으로 제시되었다. 즉, 북한출생 재학생의 경우는 58.5%, 중국 등 제3국 출생 재학생의 경우는 41.5%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분포의 경우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 수가 북한출생자 수를 초과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 이후 남한입국 북한이탈여성이 남성의 두 배, 2006년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의 세배를 초과하여 남한입국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과 연계가 가능하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파악된 북한출생 초중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총 1,204명이었으나, 중국 등 제3국 출생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수는 총 979명으로 2013년에 비해 약간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된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4).

〈표 1〉 2013~2014년 북한 및 중국 등 제3국 출생자녀의 수

구분		재학생수			합계
		초	중	고	
2013년	북한출생	532(45.9%)	270(56.5%)	380(98.7%)	1,182(58.5%)
	중국 등 제3국 출생	627(54.1%)	208(43.5%)	5(1.3%)	840(41.5%)
	계	1,159(100.0%)	478(100.0%)	385(100.0%)	2,022(100.0%)
2014년	북한출생	534(47.34%)	313(45.76%)	357(96.23%)	1,204(55.15%)
	중국 등 제3국 출생	594(52.66%)	371(54.24%)	14(3.77%)	979(44.85%)
	계	1,128(100.0%)	684(100.0%)	371(100.0%)	2,183(100.0%)

자료: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4.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이 낳은 무국적 아동으로서 그 수는 1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제3국 출생 아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한에 입국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아동청소년)의 수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30%에 해당된다. 하지만, 남한에 그 자녀를 입국시키더라도 법적으로 비보호대상자로 구분된다. 비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현지 남성을 만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되고, 중국 등 제3국 출생 자녀는 다문화이주자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각기 다른 지원법의 대상이 된다(김정립·차현지, 2012; 채경희, 2012).

지금까지 사회문화,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탈아동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주민 자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국외의 경우 미국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고아 입양법안인 ‘탈북 난민아동 입양 촉진법안(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2012년 9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켰다(KOTRA해외비즈니스정보포탈, 2012). 이로써 제3국에 버려진 북한 출생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국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북한출신 양육자(보호자)가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북한-제3국-남한이라는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상호주관적 관점을 반영시켜 이주과정 및 이주지 적응과정에서의 삶의 제한성이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어떻게 연계시켜나갔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따라서 북한출신 양육자가 인식한 제3국 출생 자녀의 삶의 제한성으로부터 가능성 연계 과정이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들의 독특한 경험의 본질이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것은 다문화적 관점과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을 상호 교차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충분히 관통시키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북한출신 양육자(보호자)가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북한-제3국-남한을 거치는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삶의 제한성과 가능성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남한에서 함께 거주하며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출신 양육자(보호자)를 연구 참여자로 삼고자 한다. 이유가 있다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대부분이 한국어 구사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통역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98%가 15세 미만자로서 제3국과 남한에서의 삶의 경험을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거시적 수준까지 통합하여 면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간(북한-제3국-남한)에 북한을 포함 시킨 이유는 북한출신 양육자가 무국적자인 상태로 제3국에 거주하는 입장 임으로 북송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재결합, 남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족해체 및 재결합 등 예상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은 제3국 출생 자녀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2012; 2013; 이화진, 2010). 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집된 자료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북한출신 양육자 가족이 남한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그들의 과거를 보듬으며 성장 가능성을 연계, 확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 질문은 ‘북한출신 양육자가 인식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아동청소년)의 삶의 제한성으로부터 가능성 연계 과정이란 어떠한 의미인가?’이다.

2. 선행연구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경자 외 연구(2011)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52명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실태를 중심으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당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6-12세에 해당되는데다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미흡하여 간략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호자 5명을 추가 면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종우(2011)는 삼척 초등학교 북한이탈아동 특별학급을 지도하면서 특례입학 근거와 학교 배정 기준, 특별학급 운영 실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출생 북한이탈주

민 자녀의 경우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치원이나 소학교를 중퇴하고 남한에 입국한 경우이기에 장기간의 학습 공백이 남한입국 이후 학업부진과 학교 생활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교사인 채경희(2012)는 교내 52명의 제3국 출생 아동청소년의 부(父)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농민의 경우가 75%로 자녀는 열악한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모국어가 중국어인 학생이 58%로 그러한 학생의 경우 간단한 한국어 일상용어를 학습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주된 연구목적이 학교적응 실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남한입국 이전부터 경험했던 제한된 삶의 경험으로부터 시공간 이동에 따른 삶의 가능성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아동청소년)에 관한 소수 연구와 더불어 최근 소수자 연구로서 남한에 입국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탈북고아) 연구(김현경, 2013)를 제시할 수 있겠다. 남한에 입국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2012년 500여명, 2013년에는 450여명으로서 북에서 출생하였으나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을 거쳐 남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변화와 기대 경험을 질적 연구로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로는 북한에서 절망으로 조각난 일상의 꿈을 움켜쥔, 중국에서 묻혀 버린 존재에서 벗어나길 원함, 남한에서 혼란과 성장의 공존에서 중심을 찾고자 함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와는 달리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남한에 입국하여 부모의 부재로 인한 홀로서기의 이픔과 그들만의 그룹 홈이나 기숙형태 안학교 등에 거주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경험의 공통점은 두 집단 모두 중국 등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살았다는 점 그리고 남한교육과정에서

이주자로서의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점, 또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도 양육자의 역량부족으로 기숙형대안학교나 그룹 홈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점을 김현경(2013) 및 최경자 외 연구(2011)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대다수는 북한이탈여성이기에 그녀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남녀의 남한입국 경향은 2006년부터 75% 이상이 여성이며 2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통일부, 2013).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의 이주자로서의 상실극복에 초점을 둔 연구(이민영·김현경, 2007)에서는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이 조선족 남성과 매매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한 이후 생존을 위해 홀로 남한에 입국하였고, 하나월을 나온 지 2개월 만에 생활수단으로 모든 과거사를 숨긴 채 초혼인 남한남성과 결혼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은 남한출생 배우자에게 과거사를 드러낼 수도 감출 수도 없는 힘겨운 심리적 불안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미혼여성으로 알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남한배우자에게 중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기에는 남한에서의 결혼생활이 해체될까 두려워했다. 북한이탈여성은 과거 사실혼 상태였던 중국출생 배우자와 남한출생 배우자를 비교하면서 새로운 결혼생활 적응에 힘겨워 함을 표현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기에 경험하게 되는 결혼생활의 독특한 고통 경험을 보여주었고 제3국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남한에 입국하여 남한남성과 재혼함으로써 과거의 결혼생활을 드러낼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이탈여성은 국내외적으로 인권적 개입이 요구되는 대상인 만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음이 분명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여성에 대한 국가의 모성보호 조치는 열악해졌고,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내몰렸으며 그 과정에서 탈북 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안의 추격과 불법체류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중개인과 현지인 등으로부터 착

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교회소 등의 수감생활 또는 국경을 넘는 과정, 제3국 체류 중에도 죽음에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노출되지만 특히 생존을 위한 매매결혼과 성폭력의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는 점이 북한남성과는 구별되는 트라우마 요인이 되고 있다(이애란, 2008; 최진이, 2005). 생계가 가능치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성(sexuality)은 다른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자신과 가족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하고 성폭력도 감내해야하는 여성들은 그 자체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박해는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1995년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에 대한 성폭력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이를 생명권을 위협하는 젠더박해로 규정하고 있다(민지원, 2003). 최근 연구들(박정현, 2006; 심영희, 2006; 이화진, 2010)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문제가 주요이슈로 부각되면서 북한여성들이 극심해진 식량난으로 인해 생계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생존권, 경제활동권, 결혼과 가족, 몸과 성에 대한 권리, 강제송환과정과 인신매매 등 다양한 맥락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여성주의시각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태현·노치영(2003)은 재중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질적연구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생존전략의 의미를 드러내었다. 분석 결과로 ‘중국여자로 위장하기’, ‘감정 드러내지 않기: 조선여자임을 인정하고 참고 살기’, ‘결혼하기’, ‘임신을 보류하기’, ‘주위 사람을 경계하기’, ‘또 다른 탈출구를 찾기’로 정리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에서 불법신분자로 생존하기 위해 중국남성과 동거하거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중국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고분고분하게 감정을 삭여야 하고, 헌신적 모성 이념을 갖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인식하고 임신을 조절하며, 신분노출을 감추기 위해 주위사람을 경계하고, 임시거처인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고려하는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국적자로서 살

아가야 했던 북한이탈여성들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이탈여성에게 노출된 위험요인들에서 최대한 벗어나 삶의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는 역동과정을 추구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중국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임신을 보류·조절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 개인의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점에 멈추고 있다. 최근 이기영 외(2014)의 질적 연구 결과에서는 중국 출생 자녀를 둔 한국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양육경험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이 직면한 생의 제한성 가운데 자녀의 성장을 위해 연계했던 자원(resource)이라든지 가장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대처보다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북한-중국에서의 생애경험을 탄력성(resilience)에 근간을 두고 이해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김현경, 2011). 관련 선행 연구는 북한이탈여성 작가의 생애 수기(최진이, 2005)를 삶의 탄력성이 담긴 역동적 의미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분석된 의미 구조는 첫째,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이탈로서의 탈북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탈북은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비전과 가능성, 희망이라는 탄력성을 부여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해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서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에 중국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의 위기는 북한이탈여성에게 또 다른 대처자원을 찾아 나서게 하는 탄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을 병리적 관점이 아닌 강점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북한 및 중국에서 심각한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석대상자 역시 중국남성의 거친 폭력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어렵게 북에서 중국으로 데려온 북한출생 자녀를 지키려는 강

한 모성애를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면서 인내심으로 견디어 나아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연구는 분석대상자가 중국남성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북한 배우자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을 중국으로 데려와 동거하는 경우로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연구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양적연구(김현경, 2012)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및 중국에서의 결혼경험은 남한 입국 이후 그들의 결혼행복감에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자녀를 포함한 가족 해체와 재결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34.5%가 평균 1년 이내에 북한 및 제3국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과 재결합하고 있으며, 가족 재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1년으로 보고되고 있다(통일부 하나원, 2008).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할 때 남한입국 이전에 자녀가 있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 및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남한에 입국시키려고 시도하였을 것이다. 특히 북한보다는 중국에 두고 온 자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남한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실행될 수 없는 경우 보류 또는 포기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불법체류 할 때 출생한 자녀를 중국배우자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배우자에게 보내지 않는 경우로서 중국배우자는 북한여성이 중국에 들어와 함께 동거하길 요구하거나 자신을 합법적인 배우자로 남한에 입국시켜주길 기대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또는 중국배우자 사이에서 사생아로 출생한 자녀에게 법적절차를 통해 중국 호적을 갖게 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돕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김현경, 2007; 2009). 하지만,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데 따르는 정서적 불안과 관련된 심리, 법률상담

이 전체 상담의 14%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장혜경, 2006), 중국에 두고 온 자녀 유무는 북한이탈주민의 결혼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하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집중 거주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권의 다문화지원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재학 중인 정규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로 크게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각 집단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시킨 북한이탈주민 양육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본 연구자가 사례관리를 통해 알게 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를 둔 탈북여성 3명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의적 표집방법인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적용하여 기존 탈북여성으로부터 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추천받아 역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로 총 10명을 선정하여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접을 시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30대가 8명, 40대가 2명이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참여자	연령	탈북연도	중국에서 결혼기간	한국입국년도	총 자녀수	중국출생 자녀의 출생년도	중국출생 자녀의 한국입국년도	참여자 현재 직업	배우자 출신 및 현재 동거여부	모계 가족 입국 여부
1	36	2000	8	2008	중국1	2002	2011 (초청)	식당 종업원	조선족 헤어집	언니와 조카
2	35	2000	10	2009	중국2	2002 2003	2010 2010 (초청)	주방 보조	한족 헤어집	없음
3	40	1997	12	2009	북한1 중국1	1999	2009 (여행비자)	요양보호사	한족 동거	없음
4	36	1999	10	2009	중국2	2001 2003	2011 (초청)	식당 종업원	조선족 헤어집	조카
5	35	2003	8	2011	중국1	2006	2013 (초청)	요양병원 주방보조	한족 헤어집	여동생
6	33	2001	9	2010	중국1 한국1	2002	2010 (동반)	제조업종사	조선족헤어집/ 남한남성 헤어집	없음
7	42	2000	9	2009	북한1 중국1 한국1	2002	2009 (동반)	간병인	한족헤어집/ 남한남성동거	없음
8	34	2004	6	2010	중국1	2005	2012 (초청)	식당 종업원	조선족 헤어집	어머니
9	33	2002	6	2008	중국1	2004	2010 (여행비자)	제조업종사	조선족 동거	없음
10	36	2003	4	2007	중국1	2004	2013 (초청)	보험 설계사	조선족 헤어집	없음

2) 자료 수집

본 연구 참여자는 유의적 표집방법인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하였다. 우선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연구자와 친밀감이 있는 하나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 내 북한이탈주민들 중 제3국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시킨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담허락을 득한 후 면담하여 자료를 녹취하였다. 이후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자를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확보하였다. 눈덩이 표집방법은 일반적으로 난민이주자인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만남이 쉽지 않은 대상자들로부터 얻기 힘든 자료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총 10명의 대상자와 전화 및 전자 우편 교환, 최소 2회-3회의 직접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1회 소요시간은 약 70분에서 90분 정도 되었다. 면담 시작 전에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비밀보장을 담보로 관련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으며 면담 이후 본 연구자가 반복하여 들으며 직접 필사 후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1) 내러티브 탐구 방법의 개념과 특성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통일부 2013년 기준 6-15세 미만이 98%임)의 제한된 삶으로부터 가능성을 연계해 가는 경험에 관한 심층적 이해는 북한출생 양육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데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 중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내러티브 탐구의 공간은 세 가지 차원으로서 시간성(temporality),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 장소(place)를 강조하기 때문이다(Clandinin and Connelly, 2000). 이는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협력으로 이해되고 있다(Connelly and Clandinin, 1990).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

러티브 탐구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기 위해 존 듀이(Dewey)의 경험이론, 특히 경험의 상황적, 상호작용적, 그리고 연속적 특성에 기초하여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s)'이라는 은유적인 용어를 고안하여 발전시켰다.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구체화시켜 주는 세 가지 차원의 핵심은 시간성(temporality),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장소(place)이다. 이때 시간성은 인간 경험의 일시성을 말한다. 일시성은 또한 집단적 경험의 의미도 갖는다. 시간성은 과거에 대한 생각 뿐 만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순간 경험하는 일상의 삶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연속적 개념으로서의 시간 즉,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을 포함한다. 따라서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어떻게 경험 속으로 끌어들이 개인의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재배열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고전적인 상징적 상호주의의 전형적인 접근으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관, 기관과 기관을 포함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관계까지로 환원된다. 즉 사회 구조를 행위자간의 상호관계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는 특정 장소 및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협력과정을 통해 구축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존 듀이의 삼차원 공간은 상황(situation), 지속성(continuity),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구성되며 경험에 대한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내러티브 연구는 inward(감정, 희망, 심미적 반응, 도덕성처럼 내적 상태를 향하는 것을 의미), outward(환경인 실존적 상태를 향하는 것을 의미), backward와 forward(시간성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로 여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이끌어 간다. 내러티브 탐구는 어떠한 사회과학 방법들 보다 더 '무엇이 사실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가장 탐색적인 연구방법이다. 내러티브는 관점, 메시지, 주제가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인간 경험의 기본적인 구조이며, 총체적인 질(Holistic Quality)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러티브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삶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러티브에는 시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경험이 스며져 있으며 공유된 신념과 문화적 가치를 구성하고 전하며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이민영, 2005) 본 연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정리하자면, 북한이탈주민(대부분이 여성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현지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신의 자녀를 새로운 삶의 기대를 갖고 남한에 입국시킨 이후, 그 자녀가 비보호대상자로 구분되어 이주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북한출신 양육자로서 지각되고, 느껴지고, 해석되어지는 삶의 제한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연계하였는지 과정에 따른 경험적 의미와 본질을 내러티브탐구 방법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내러티브탐구 방법은 본 연구 참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사공간적 경험을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구바와 링컨(Guba and Lincoln, 1981)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네 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기반하여 연구의 엄밀성(rigor)을 따르고자 한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써,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는가를 말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에 의하여 또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서술과 해석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 있어서 사실적 가치 측면의 반영을 위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아동청소년 및 국제난민이주 아동청소년에 관한 전문서적, 영화·다큐,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터넷 자료 등을 꾸준히 접하면서 제3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북한출신 양육자(보호자)의 경험을 비교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

쳤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의 적합성을 말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비록 표본 수는 적다할지라도 통계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 집단에 소속된 어떤 대상자도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 제공자가 실제 체험을 충분히 잘 묘사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그리고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고유한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력이 있는 것으로 적합성을 평가한다. 연구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북한이탈여성에게 의해 출생한 자녀와 북한출신 양육자가 남한으로 이주하기까지 북한 및 제3국 그리고 남한에서의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고 그들 개인의 기록물 및 내러티브 등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평가는 연구결과의 반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질적 연구는 감각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현실 속의 사람들의 체험과 환경의 독특성을 강조하므로 공통적인 반복이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같은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자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충족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감사성(auditability)은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을 때를 말하며 다른 연구자도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에서 발견될 주제와 범주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 비교 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연구의 일관성 측면을 높이기 위해 연구의 핵심개념이 발견되고 구조가 어느 정도 도출되었을 때,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10년 이상 지도하신 대학교수1인으로부터 제3국에서 현지 출생 아버지와 북한출생 어머니를 둔 자녀가 제3국에서 남한이라는 시공간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생활 경험에 대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효과적인

감사(auditability)를 실행하였다. 또한 북한출생 양육자의 인식을 통해 해석되어진 제3국 출생 자녀와의 삶의 제한성과 가능성 연계에 초점을 두고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아동청소년)를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 교사1인 그리고 실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하나센터 담당자1인 및 다문화지원센터 담당자1인의 실무관계자로부터 자문과 감사를 실행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객관성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가정과 선 이해를 검토해 보는 것은 연구 실행 전에 실행해야 할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다년간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해 오면서 그들의 공통점만큼이나 상이성도 다양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졌던 스스로의 가정에서 벗어나 연구자로서의 판단중지(Epoche)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덧붙여 북한이탈주민 성인 및 아동청소년과 관련되어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어 있는 그들의 다양한 자전적 체험기록, 영화 및 다큐, 난민이주자 관련 전문서적 및 학술논문 등을 접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곡과 생존과정의 다양성을 확인해 나아갔다.

4. 결과

본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 질문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 8개의 하위범주, 22개의 주요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고 각각의 구체적 범주와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 3〉 북한출신 양육자가 인식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아동청소년)의 삶의 제한성으로부터 가능성 연계과정 분석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중국에서: 그늘진 생에서 버텨뚝이 된 자녀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서의 모자관계	음지에 갇힌 모성을 인식함 예측할 수 없는 북송으로 자녀와의 이별이 두려움 자녀교육은 중국인 배우자(시댁)의 결정에 내어 맡김
	삶의 중심을 자식에 둠	북송 후에도 자녀가 있는 중국으로 되돌아감 자녀의 호구를 만들어 존재를 세워줌 호구 없는 자녀지만 교육을 위해 학교에 보냄 자식을 생각하며 불행했던 결혼생활의 고통을 참 아냄
남한이주 과정에서: 힘겨웠던 생존의 터널을 빠져나감	자녀와의 미래를 위해 가족 해체를 계획함	중국 배우자(가족)의 협조를 얻어 분리를 계획함 터전을 잡기 위해 자녀를 중국에 두고 홀로 떠남
	자녀가 외국인으로 구별됨을 깨달음	교육과정에서의 분리와 통합 처우에서 드러난 차이로 순간 서운해짐을 달랠
남한입국 후 하나원에서: 어린 이방인에 대한 다른 차원의 배려	다름의 차이를 받아들임	타국서 데려온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삶의 의미로 해 석함 아버지가 외국인(중국인)인 자녀와 동질감을 형성
	해체된 가족의 재구축	중국인 배우자와 정식 국제결혼을 통해 자녀 존재를 공식화함 한 부모 가정으로 만족하며 중국인 배우자에 대한 애증을 다스림 불안정했던 모자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함
하나원에서 벗어난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힘겨움을 받쳐줄 삶의 끈을 잡아당김	자녀교육의 심지를 찾고자 함	자녀의 성장을 위해 한국에 교육에 관심을 가진 도움이 되는 교육 정보를 얻고자 함 자녀를 하나센터의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 시킴 다문화가족지원에 속하는 자녀의 혜택도 찾아봄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중국으로 다시 보낼 것도 고려 해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가장과 어머니 역할의 병행	자녀의 양가(외가와 친가) 부재로 양육의 힘겨움을 받쳐줄 대체가족을 찾아봄
		한 부모 가정의 곤고함을 이겨나가고자 함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국의 국적을 선택하게 함

1) 중국에서: 그늘진 생에서 버팀목이 된 자녀

(1)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서의 모자관계

북한이탈여성의 국경이동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임으로 탈북여성들은 안전한 생존 방법인 현지 중국남성과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탈북여성들을 맞아 들이는 현지 중국남성 대부분이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극빈층으로 신체장애가 있거나 20대 탈북여성과 상당한 연령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현지인의 그늘에 가려 숨죽이며 생존을 이어가야하는 생의 아픔 속에서 출산한 자녀는 그녀들의 버팀목이자 예비된 고통이기도 했다.

① 음지에 갇힌 모성을 인식함

스무 살 때 국경을 넘었는데 길잡이가 나를 길림성으로 넘겨서 거기서 마흔 살 넘은 조선족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우리 ○○이 아빠예요. 중매인이 나보고 싫으면 북한으로 다시 가래. 갈수 없는 거 다 아니까...2년 만에 우리 아들 ○○이를 낳았는데 애 아빠가 엄청 좋아했지. 근데 내가 북한여자니까 중국에서 호구 등록이 안 돼. 우리 ○○이도...사람이 호구가 없으니 애 엄마라도 남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고...(사례 1).

② 예측할 수 없는 복송으로 자녀와의 이별이 두려움

중국도 도시는 살기 바쁘니까 서로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시골은 달라요. 마을에 부녀반장이 있어서 누가 사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북한여자

가 산다고 언제 신고 들어가서 복송될지 모르니까 늘 두려웠어요. 아이 앞에 두고 공안한테 끌려갈까봐...(사례 8).

③ 자녀 교육은 중국인 배우자(시댁)의 결정에 내어 맡김

중국말을 우리 애 만큼도 못하는 내가 거기서 교육을 뭘 알았겠어요. 엄마라 해도 한국에서처럼 배울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아이가 뭘 배우던지 간에 애 아빠가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사례 10).

(2) 삶의 중심을 자식에 둠

북한이탈여성이 이국땅에서 출산한 자녀는 어머니로가 된 탈북여성의 생존의 이유가 되었다. 술주정뱅이 현지 남편과 극빈한 장애인 남편이라도 내 자녀가 있기에 복송의 모진 고문 후에도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나아가 비록 사생아로 출생한 자녀이지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① 복송 후에도 자녀가 있는 중국으로 되돌아감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때리고 온 마을을 시끄럽게 하니 까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공안이 찾아 왔어요. 남편이야 중국 사람이니까 벌금 좀 내고 풀려났지만 마을 부녀회장이 나를 북한여자라고 신고했다고 그대로 복송돼서 구류소부터 거의 죽다시피 맞았어요. 다시 수용소로 넘어가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간수가 내가 곧 죽을 줄 알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일주일을 버스 타고 간신히 친정집으로 갔어요. 온몸에 병이 들어서 거의 한 달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친정 엄마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간신히 몸을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중국에 두고 온 자식이 생각나서 북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있는 중국에 있는 그 집이 내가 살 곳이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간 거지요(사례 8).

② 자녀의 호구를 만들어 존재를 세워줌

아이가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호구가 없으니깐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시
택에서 돈을 주고 호구를 만들어왔어요. 호구에 실려야 살아 있는 아이가
되는 거라서...(사례 9).

③ 호구 없는 자녀지만 교육을 위해 학교에 보냄

아이한테 호구가 없어서 못 배우면 어쩌하나 걱정하면서 애 아빠가 학교 담
당자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중국 아빠한테서 태어난 중국 아이인건 확실하니
까...다행히 학교에서 우리 ○○이를 받아줬어요(사례 5).

④ 자식을 생각하며 불행했던 결혼생활의 고통을 참아냄

말 통하는 조선족남자는 그래도 낫지요. 말도 통하지 않는 반신불수 한족
남자하고 살면서 어느 때는 속이 터져서 정말 북한으로 확 가고 싶었어요.
종일 땀벌에 맨발로 농사 지면서 겨우 먹고 사는 건데...갈 수가 없어서 못
간 거도 있었지만 내가 없으면 저 아이를 누가 돌봐주나...참고 또 참고 살
수밖에...(사례 7).

2) 남한이주 과정에서: 힘겨웠던 생존의 터널을 빠져나감

존재를 숨겨야 하는 이방인으로 생존을 유지했던 북한이탈여성은 자녀성
장을 위해 극빈한 현지 생활보다 남한이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
조하며 사이가 원만했던 현지 배우자의 협조를 구했다. 가정생활이 불안정
한 경우에는 현지 배우자 모르게 단독으로 남한 이주를 실행함으로써 고단
했던 과거의 터널로부터 빠져나가하고자 하였다.

(1) 자녀와의 미래를 위해 가족 해체를 계획함

① 중국 배우자(가족)의 협조 얻어 분리를 계획함

중국 시골이라도 텔레비전은 다 있어요.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북한사람이 한국가면 아파트도 주고 할 일도 많이 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한국 가서 살자고, 헤이룽 강 깊숙한 시골마을이라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자 혼자서는 그 마을을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애들을 한국에 데려가려면 애 아빠가 허락을 해야 가능해요. 애들 아빠가 몇 날을 고민하더니 나보고 먼저 한국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라고 보내줬어요. 나중에 애들하고 아빠를 한국에 초청하는 걸로...(사례 2).

② 터전을 잡기 위해 자녀를 중국에 두고 홀로 떠남

북송 후에 중국에 다시 들어간 이유도 자식 때문이었는데...또 신고 들어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쯤 한국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마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요. 남편이 집에 없는 날 아이한테는 엄마가 삼십 밤 자고 돌아온다고 말했더니 애가 열 밤만 자고 오라고 울면서 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나도 울고...우선 내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애를 다시 만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아이 손을 강제로 떼어냈어요(사례 8).

3) 남한입국 후 하나원에서: 어린 이방인에 대한 다른 차원의 배려

(1) 자녀가 외국인으로 구별됨을 깨달음

힘겨운 과정을 거쳐 데려온 자녀이나 제3국 출생자녀를 비보호로 분류하여 북한출생 자녀와는 다른 차원의 처우를 경험하게 되었다.

① 교육과정에서의 분리와 통합

우리 애 아빠가 한족이어서 애가 중국어만 할 줄 알지 한국말은 전혀 몰랐어요.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중국 애들, 남한 애들, 북한 애들 다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한국말 모르는 우리 애는 눈치껏 했다고...오후반부터는 중국어 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중국 애를 하나씩 붙들고 한글도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었다고...우리 애가 한국어를 못해서 그렇지 중국서 학교를 다니다 와서 학교가면 규칙을 지켜야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한국말만 잘 하면 공부하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사례 7).

② 처우에서 드러난 차이로 순간 서운해짐을 달랠

하나원에서 용돈을 주거든요. 애들하고 매점 가서 과자나 간식 같은 거 사먹고 하는데 우리 애는 비보호아이라서 북한아이보다 적게 받았어요. 사실 우리 애가 뭐 알겠어요. 내가 서운한 거지. 그럴 때 하나원에서 배운 정신건강 10대 수칙 중에 '때로는 손해 볼 줄 도 알아야 한다.' 그걸 떠올리면서 마음을 달래는 거지요(사례 6).

(2) 다름의 차이를 받아들이

제3국 출생자녀를 데려온 여성은 다른 북한여성들로부터 지나친 염려와 충고 그리고 비난 섞인 말투 등을 경험하였다.

① 타국서 데려온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삶의 의미로 해석함

정착지원금도 없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를 뭐 하러 한국에 데려와서 고생 하느냐, 한국생활도 모르면서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하느냐, 중국남편한테 생활비 보내주고 애를 중국에 있게 하지...하나원서 같이 지내던 북한 엄마들이 그리 말이 많았어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이미 데려온 애를 두고 그러니까...내가 엄마 없는 아이로 살게 하는 거 보아야 낫겠지요. 살

다보면 해결되겠지요. 여기에 아무도 없는데 곁에 자식이라도 있으니가 좋아요...대꾸하면서...(사례 6).

② 아버지가 외국인(중국인)인 자녀와 동질감을 형성

까치는 까치끼리 어울린다고 북에서 온 애들이 조선말 모르는 우리 애를 끼워주지 않으니까 우리 애가 자연히 중국서 온 애들하고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북한 애들이 중국서 온 우리 애들을 모서리(따돌림) 취급하니까 나도 애 따라서 중국서 온 애들을 찾게 되고...(사례 7).

4) 하나원에서 벗어난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힘겨움을 받쳐줄 삶의 끈을 잡아당김

(1) 해체된 가족의 재구축

하나원 교육 이후 북한이탈여성은 중국인 배우자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녀의 존재를 합법화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불행했던 배우자와의 가족사를 반추하며 애증의 양가감정을 다스리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여성이 장기간의 부재로 인해 불안정애착이 형성된 자녀와 정서적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힘겨워보였다.

① 중국인 배우자와 정식 국제결혼을 통해 자녀 존재를 공식화함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민등록에 미혼으로 되어 있어서 내 아이라는 걸 증명해야하는데 중국에 우리 아이 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내가 정식으로 애 아빠하고 국제결혼을 해서 애를 호적에 올려서 데려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사례 4).

② 한 부모 가정으로 만족하며 중국인 배우자에 대한 애증을 다스림
아이 네 살 때 중국에서 헤어져서 육년 만에 한국에 데려왔어요. 중국남

편한데 우리 ○○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나보고 와서 살라는 거예요. 시택에서 주지 말라고 했다고. 궁금해서 중국으로 사람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돈하고 옷하고 보내고...애 아빠가 애 핑계되면서 생활비를 보내라고 해서 애 데려올 때까지 몇 년을 꾸준히 붙여 줬어요. 그랬더니 시택에서 아이를 나한테 보내겠다고... 아이가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아빠 데려올까?' 그랬더니 데려오지 말래요. 엄마랑 둘이만 살자고. 애 아빠가 매일 술 마시고 얼마나 애를 괴롭게 했으면 애가 아빠는 없어도 된다고...같이 살 때도 술 마시고 날 때려서 죽여 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지금 (중국)남편을 생각하면 애도 아내도 없었으니 불쌍하기도 하고...거기서 남편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애 아빤데...(사례 8).

③ 불안정했던 모자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함

내가 엄마라도 몇 년 만에 애를 만나보니 애 모습이 어찌나 구질구질하게 변했는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애가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그랬는지 그렇게 그리워했던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애를 처음 만나고 얼마 동안은 정말 꿈같았어요. 애도 그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가 왜 나를 버리고 엄마 혼자만 한국에 왔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하더라고요(사례 3).

우리 ○○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깐 짜증이 난다면서 집에 오면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애는 쑥 컸는데 지난 세월만큼 애에 대해서 모르니까 편치만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애를 중국서 괜히 데려왔나 그런 생각도.. 애 한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중국서 계속 살 수가 없었던 이유, 혼자서 한국에 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대한민국사람으로 엄마가 중국에 가도 만일 문제가 생기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어서 쉽게 중국에 갈 수 없었던 이유, 엄마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중국에 얼마나 우리○○ 같은 애들이 많

이 산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이가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그랬으면 한국에 데려오지 않았을 거라고...에 하고 나하고 한참을 울었어요(사례 10).

(2) 자녀교육의 심지를 찾고자 함

북한이탈여성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에 초석을 연령에 맞는 한국어실력 함양에 두었으며,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얻고자 하였다. 자녀가 비록 비보호로 분류되었다고 해도 모계가 북한출생임으로 자녀 역시 북한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했기에 하나센터를 찾았다. 부계가 중국인임으로 다문화가정에 속하기도 하나 심정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한편 자녀가 한국생활 적응에 지나치게 힘겨워하는 경우 자녀의 성장을 위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고려하기도 하였다.

① 자녀의 성장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짐

아이가 한글 기초도 모르는데 학교는 다녀야지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도 빨리 말을 배워야 학교공부를 따라가잖아요. 한글 배워주는 학습지 선생님 일주일마다 세 번씩 오시라 해서 애한테 한글 초급부터 읽고 받아쓰고 발음하고 과제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시켰어요. 6개월 쯤 지나니까 애가 혼자서 동화책을 보더라고요. 엄마한테 동화책 좀 읽어 줄래 하면서 아이 발음도 고쳐주고 단어 뜻을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렇게 듣고 서로 말하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사례 4).

② 도움이 되는 교육 정보를 얻고자 함

북에서는 예체능 하는 애들이 결혼도 잘 하고 편하게 살아요. 거기 뽑히려면 엄마들이 선생님도 자주 찾아가야 하고 돈도 많이 들이거든요. 남한서

는 엄마들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비싼 학원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애들은 여기저기서 장학금이나 생활비 보조도 받고 대학갈 때는 특례 입학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 애는 그런 교육혜택은 전혀 없거든요. 엄마가 될 알아야 애를 지도하는데 모르니까 우선은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무조건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센터 가서도 물어보고...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콜센터라는 게 있어요. 전화하면 모르는 거 받아주니까 연락해보고...(사례 1).

③ 자녀를 하나센터의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시킴

아파트 근처에 하나센터가 있는데 애를 데려왔다고 하니깐 하나센터 선생님 애들끼리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남북한 애들끼리 축구하는 모임도 있고 북에서 온 애들하고 중국서 온 애들 모두 모여서 떡볶이도 만들고...이거 저거 만들어서 먹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나 먹을 거 만들어 먹으면서 놀면 즐겁잖아요. 한국말도 늘고 친구도 사귀라고 애를 보냈어요(사례 6).

④ 다문화가족지원에 속하는 자녀의 혜택도 찾아봄

내가 북한사람이여도 남한국적이 있고 아이 아빠가 중국인이어서 우리 애가 다문화가족에 속한다는 겁니다. 마음이야 북한서 태어난 애들처럼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남한에 다문화가족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도입국자녀라고 부르던데...엄마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애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면 싫을 이유야 없지요. 우리 애가 학교 배치받기 전에는 애를 센터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학교 들어가서는 한국어 선생님이 매주 두 번씩 집에 오셔서 두 시간 정도 애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학 때는 캠프도 가고 놀이동산도 데려가주시고, 부모교육인가 엄마도 알아야 한다고...아이가 학교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가서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애한테도 배부르게 먹인다고 해서 건강

해지는 게 아니라면서 영양을 생각해서 먹이라면서 음식에 대한 공부도 시켜줬어요(사례 2).

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중국으로 다시 보낼 것도 고려해봄

우리00이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어요. 시댁에서 워낙 예뻐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장애가 있어서 애를 돌볼 수 없다고 하니까...애가 여기 와서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다보니 왜 내가 한국에 살아야 되냐 여기 애들은 중국 말 배운다고 학원 다니더라...나는 중국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데 한국말을 왜 배우라고 해서...다 엄마 때문이라고...내가 뭘 물어보면 화난 표정으로 대답도 안하고...차라리 시댁 고모한테 부탁해서 생활비를 보낼 테니 아이를 다시 중국에 보내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사례 5).

(3) 가장과 어머니 역할의 병행

제3국 출생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이 남한국적을 취득했다 해도 북한 및 혈육과의 단절 그리고 중국 배우자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들은 최대한 사회적 관계망을 끌어내어 남한생활의 힘겨움을 받쳐줄 삶의 끈으로 삼고자 하였다. 한국에 들어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북한사람들과 집단생활을 하였던 하나원동기생과의 연계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작용하였다. 가장과 어머니의 역할을 병행해야하는 그들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은 힘에 붙이는 과업이었다. 따라서 자녀를 대체가정인 그룹 홈에 맡김으로써 가장과 어머니 역할 조율이 가능하였다. 나아가 북한이탈여성이 인지한 제3국 출생 자녀가 한국결혼이주여성의 자녀와 다른 차이를 부계나라인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최종 선택함으로써 한국에서 모자가생의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① 자녀의 양가(외가와 친가) 부재로 양육의 힘겨움을 받쳐줄 대체가족을 찾아봄

여기에 친절도 없고 시댁도 없으니까 애 키우면서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없이 하나원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낸 북한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언니 남편은 조선족인데 일을 나가서 언니는 집에서 애만 봤거든요. 우리 같은 북한여자 입장을 다 아니까...아이 봐주겠다고 오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친절언니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사례 2).

② 한 부모 가정의 곤고함을 이겨나가고자 함

애 기르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힘들게 데려온 애를 그룹 홈이라는 데로 보냈어요. 한국말도 모르는 애를 집에 혼자 뒀는데 누가 와도 대답도 잘 못하고 혼자 두니까 엄마 올 때까지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늦잠 자니까 억지로 깨워서 학교에 보내려니 아침마다 나한테 야단맞고 애는 짜증내고...누구라도 애하고 함께 있어줘야겠다 싶었어요. 한국말도 쓰면서 공부도 누가 좀 봐주고...애를 거기에 맡겨 두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안착돼서 식당일 하는데도 애 생각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생각할 때는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손님이 불러도 들리지를 않았어요(사례 6).

③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국의 국적을 선택하게 함

여기 와서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엄마가 중국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애가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커서 엄마 나라인 중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워낙 대국이라서 엄마나라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아들인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군대가야하니까 만 18세까지는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은 군대를 자원해서 가거든요. 우리 애는 입장이 다르지요. 엄마인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국적을 받았고 애도 한국국적을 받았다 말입니다. 아빠가 중국인이라도 비보호 애들은 중국국적 거의 다 포기한다 말입

니다. 뭐 하러 애를 중국에 보내요? 우리한테는 한국이 살기가 더 좋은데...난 우리 애를 한국 사람으로 키워서 한국에서 같이 살 겁니다(사례 10).

5. 결과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북한출신 양육자인 어머니가 북한-제3국인 중국-남한이라는 사회문화적 시공간의 맥락 안에서 그들의 과거를 보듬으며 생의 가능성을 어떻게 연계하고 확대시켜나갔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결과분석에 따라 크게 네 개의 범주, 즉 ① 중국에서: 그늘진 생에서 버팀목이 된 자녀 ② 남한이주과정에서: 힘겨웠던 생존의 터널을 빠져나감 ③ 남한입국 후 하나원에서: 어린 이방인에 대한 다른 차원의 배려 ④ 하나원에서 벗어난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힘겨움을 받쳐줄 삶의 끈을 잡아당김에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여성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중국 현지 남성과의 원치 않은 결혼생활은 끝없이 고달프고 불안정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서의 모성은 자녀와의 공식적 관계를 제한시켰으나, 북한이탈여성에게는 견디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복송 후 고문의 후유증을 안고서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이유도 삶의 제한성을 뛰어 넘어 자녀를 지키려는 모성과 연계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극빈한 가정생활에서도 참여자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지는 중국의 중산층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의하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도 중국 교육기관에서 호구라는 신분증명이 필수적이지는 않았기에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자녀교육에 대한 과정 개입은 불법체류자인 북한이탈여성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과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인 배우자(시댁)에서 내리는 결정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국내 입국 이후에는 북한이탈여성 양육자의 주도적인 부모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남북한출신 이문화 부부의 자녀 교육의 경우에도 남한출신 배우자의 개입과 결정에 북한출신 배우자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민영, 2005)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서 위태로운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의 제한성을 느낀 북한이탈여성 참여자들은 자녀의 성장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단호하게 남한으로의 이주를 계획하였다. 힘겨웠던 생존의 터널을 빠져나가 새로운 가능성과 연계하고자 함이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들의 한국입국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사례 6>과 <사례 7>처럼 북한출신 어머니가 자녀를 동반하여 중국에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등을 거쳐 입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사례 2>처럼 어머니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초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녀(중국인 배우자 및 시댁식구 동반)를 데려오는 방법이다. 이는 중국인 배우자의 협조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중국인 배우자가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한국에 보내길 원치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모성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중국인 배우자 및 시댁식구의 강압적인 초청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일단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인 남편과 국제결혼절차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 또는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안내인을 통해 중국에서 여행비자로 자녀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 입국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들이 모두 하나원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북한출신 어머니와 동반 입국한 경우에만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하나원 생활을 접하게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중국출생 자녀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북한출신 자녀에게도 은근히 따돌려지며, 같은 북한출신 어머니들의 일부로부터 중국에서 자녀를 데려왔

다는 사실이 모성에 차원에서 해석되지 못하고, 현실검증이 부족한 양육자라는 염려와 비난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하고,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비보호청소년으로 분류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생지별로 지원체계 및 정착지원법상의 지원내용²⁾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참여자에게 자녀는 중국이라는 이국에서 자신이 살아야할 이유를 깨닫게 해준 존재 자체로서 의미 있는 전체였다. 그녀들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물질적 지원이나 그밖에 것과는 비교도

-
- 1) ① 교육부에서는 주로 탈북학생으로 명명(탈북청소년중 학교에 재학중인 집단을 일컫는 용어)하며 비보호청소년을 포함해 통상 학령기(만6세-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근거법령은 없다, ②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주로 비보호청소년(제3국출생북한이탈주민자녀)으로 명명한다. 통상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결정이 안된 청소년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다. 탈북학생으로 분류할 때는 학령기(만6-18세),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분류할 때는(9-24세)로 한다. 근거법령은 없다. ③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근거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24세 이하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탈북청소년도 이주배경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본다(이기영·김민경, 2015).
- 2) 제3국출생자녀에게는 탈북청소년자녀에게 제공되는 초기적응교육(즉,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교육과 숙식은 제공되는 그 외의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정착금지원(기본급인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가산금으로 노령, 장애, 한 부모가정, 아동보호,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주거지원(임대아파트 알선 및 1인세대 기준 1,300만원), 교육지원(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입학·편입학, 학비지원으로 중학교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보조, 예비학교 및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부 인정 특성화학교 입학),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보호(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대상으로 본인부담 없이 의료혜택 제공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룹 홈, 탈북대안교육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해당 시 관련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교육차원에서는 남한청소년과 동일한 상태이다(이기영·김민경, 2015). 사적·공적지원체계에서 탈북청소년은 통일부지원, 하나센터 초기적응교육 및 여성가족부 탈북청소년으로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한 유형으로도 보고 있다.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교육부는 그들을 탈북학생으로 인정해 교사와 탈북학생의 1:1멘토링 등의 교육지원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자녀로 지원 중이다. 통일부는 비보호청소년으로 분류해 탈북자 법적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남북하나재단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대상에 거의 해당시켰다, 다양한 민간지원 단체의 장학금 등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다(이기영 외, 2014).

할 수 없는 절대적 차원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자녀가 받는 차별에는 정책에 대한 서운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민망함이 공존하였다. 따라서 <사례 7>처럼 제3국 출생자녀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북한출생자녀와는 출발부터 다름을 인정하고 동질성을 확인해주는 같은 제3국 출생자녀 및 그들의 어머니들과 교감하게 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하나원에서 벗어난 일상생활은 중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삶의 제한과 힘겨움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해체된 가족을 재구축시키고 자녀교육의 심지를 찾고자 고군분투하며 가장과 어머니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자녀와 상호작용 연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해체된 가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서 숨겨야 했던 모자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중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통해 자녀의 존재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중국인 배우자와 동거생활 중 겪게 된 애증을 다스리면서 남편으로서가 아닌 자녀의 아버지이기에 그를 연민으로 용서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제3국 출생 자녀와의 불안정했던 모자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녀들은 장기간의 헤어짐으로 성장과정을 지켜보지 못해 모습조차 달라진 자녀를 만났을 때 <사례 3>처럼 그리움과 동시에 낯설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학령기의 어린 자녀 역시 이주국의 변화된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가운데 <사례 10>처럼 일상에서의 답답함과 짜증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어머니에게 투사하기도 하였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대부분이 유년기부터 어머니의 부재 또는 중국인 아버지의 방임, 자녀동반으로 국경을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한국어 미달로 인한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 위축됨 등으로 욕구불만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북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이주자의 삶에 대한 앞선 경험이 있기에 자녀의 불안적 애착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투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녀와의 갈등 수준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자녀를 한국에 데려온 것이 자녀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가 싶어 후회의 순간도 있었다고 하였다. 문지영(2013)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를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행한 결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가능하여 정서조절과 심리적 충격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양육과정이 어머니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독특한 사례라는 점에서 치료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일반 다문화가정자녀와 동일한 입장에서 처우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는 동안 성을 매개로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된 임신으로 출산한 자녀 역시 중국서 공식적으로는 사생아로 간주된다. 난민이주자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은 탈북자로 인정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서 북한이탈여성의 탈북, 즉 '북한국민이었던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고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전 과정'이라고 개념화(김윤나, 2014)할 때 탈북 과정 중에 출생한 자녀를 과연 일반적인 다문화가정 자녀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탈 여성이 중국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이 일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 즉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난민수용소 등을 거치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탈북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남한국적을 얻고자 하는 목적지향은 결국 동일하다고 볼 때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는 북한출신 모성의 탈북 역사를 공유한 어린 대상이라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그녀들의 제3국 출생 자녀가 일반적인 다문화로 분류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본질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와 그들의 어머니인 탈북여성은 한국의 결혼이주 여성이 속한 다문화과정과는 출발과 생존과정, 한국입국과정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가

남한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 북한이탈지원법과 다문화지원법의 통합적 또는 절충적 관점에서 교육적 혜택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경제사회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또는 중국인 배우자(시댁)과는 단절된 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 부모를 꾸리게 된다. 이렇게 가장의 역할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을 병행해 나가야하는 입장이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양가, 즉 외가와 친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자 하나원 동기생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자녀를 그룹 홈으로 보내어 자녀에게는 한국에서의 대체가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에게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는 현행법상 국제결혼 자녀이기에 부와 모계의 이중국적을 유지 후 선택(남성은 만18세 이전, 여성은 만22세 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부계 나라인 중국국적을 모두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선택한 한국국적을 선택함으로써 모성과 연계하여 한국시민으로 성장하길 원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를 안전하게 모성과 연계시켜줄 심리사회적·문화적 공간은 한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북한출생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탈북하여 제3국인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 남성(한족/조선족)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새로운 삶의 기대를 갖고 남한에 입국시킨 이후에 그 자녀가 비보호대상자로 구분되어 한국이주생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북한출신 양육자로서 지각되고, 느껴지고, 해석되어지는 삶의 제한성과 가능성 연계 과정의 경험적 의미와 본질을 내러티브탐구 방법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일반 다문화가정자녀와 동일한 입장으로 처우하는 것은 심리사회발달 및 교육적 차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

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가 남한에서 자아를 성취하며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 요구되는 보듬어 주는 환경이 결핍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지원법과 다문화지원법의 통합적 또는 절충적 관점에서 교육적 혜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 및 중국배우자와의 가족해체-통합-재해체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상실의 아픔을 다루고, 남한에서는 새롭게 시작된 이주생활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 의존대상으로서 또는 생계수단으로서 성급하게 남성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성숙한 모성으로서 자녀와 연계될 수 있는 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014), 「탈북청소년 주요 통계자료」.
- 김윤나(2014), “제3국 출생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3호, 21-39쪽.
- 김정림·차현지(201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위한 법적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검토」, 법무부 통일법무과, 제11권, 127-161쪽.
- 김태현·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12호, 229-243쪽.
- 김현경(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200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_____(2011), “탄력성(resilience) 관점에서 조명한 북한이탈여성의 생애 연구: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4권 2호, 7-36쪽.
- _____(2012), “북한이탈주민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1-31쪽.
- _____(2013), “남한입국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변화되어가는 삶의 기대에 관한 질적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2호, 69-101쪽.
- 문지영(201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미술치료 단일사례 연구”, 동국대학교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석사학위 논문.
- 박정현(2006),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의 역할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 논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 「2011 연구커뮤니티 분과세미나자료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연수센터.

_____ (2012), 「2011 연구커뮤니티 분과세미나자료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연수센터.

_____ (2013), 「북한이탈주민 정착현장을 오다: 2013년도 공동학술대회 북한이탈주민 자료집」.

심영희(2006),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 연구』, 제45권 2호, 151-194쪽.

이기영 외(2014),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지원정책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모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연구총서.

_____ · 김민경(2015), 「탈북청소년의 다양성과 정책대응방안」,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5.4.3).

_____ · 김민경 · 백정원(2014), 「중국출생자녀를 둔 한국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9권 3호, 213-24쪽.

이민영(2005), 「남북한 이문화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내러티브담구방법을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 김현경(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생의 극복체험, 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5호, 525-554쪽.

이에란(2008), 「북한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인권침해 실태: 가혹한 노동자 성폭행에 시달리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없는 북한여성들」, 『북한 리포트』, 3월호, 104-111쪽.

이종우(2011), 『탈북초등학생 특별학급 운영의 실제』, 서울: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29-38쪽.

이화진(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장혜경(2006), 「새터민 가족문제와 정책방향 보고서」, 한반도평화연구원.

채경희(2012), 「탈북아동청소년과 제3국 출생아동청소년의 교육적응실태」,

2012 연구커뮤니티 분과세미나자료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경자 · 곽종문 · 채경희 · 박찬수(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실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진이(2005),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경기: 북하우스.

통일부(2013), 「북한이탈주민 남한입국 통계자료」.

통일부 하나원(2008), 「북한이탈주민 가족통계」.

Connelly, M. F. and J. D. Clandinin(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pp. 2-14.

Clandinin, J. D., and M. F. Connelly(2000), *Narrative Inquiry*, San
Francisco: Jossey Bass.

Guba, E. and Y. Lincoln(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인터넷 자료〉

KOTRA해외비즈니스정보포탈(2012), “북한정보: 美, 탈북 아동 입양 법안
하원 통과”, [www.globalwindow.org/gw/krpinfo/GWKIEC020M.
html? AR_TICLE_ID=2157501&BBS_ID=15](http://www.globalwindow.org/gw/krpinfo/GWKIEC020M.html?AR_TICLE_ID=2157501&BBS_ID=15)(검색일: 2015.2.28).

(논문 투고일: 2015.04.30, 심사 확정일: 2015.05.25, 게재 확정일: 2015.06.04)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loration of Connected Possibilities from the Limited Life of Second Generation North Korean Refugees Born in a Third Country: From North Korean Parents' Perspective

Kim, Hyun 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rientation of professional intervention for second generation North Korean refugees born in a third country,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China and South Korea. A narrative inquir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and exploration of lived experiences. Ten North Korean mothers were recruited by snowball sampling and interviewed in-depth from August to December 2014.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is the meaning of lived experience for connected possibilities from limited life of second generation North Korean refugees born in a third country from North Korean parent’s perspective?”. This research was analyzed according to four constituents: 1) Children as providing support in their shadowy life in China, 2) Escaping from an agonizing life tunnel for survival during migration to South Korea, 3) Another dimension of consideration for young aliens in Hanawon, and 4) Pulling helpful strings under the difficult everyday life after leaving Hanawon.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s a need to integrate or compromise on the support law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for second generation North Korean refugees born in a third country in order to get educational support.

Key words: second gene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orn in third country, none-protective children, limited life, connected possibilities, North Korean parent’s perspectiv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won University